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자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20년 3월 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 1.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3. 2.(월)	담당부서	산업기술개발과
담당과장	이재식 과장(044-203-4530)	담 당 자	양동춘 사무관(044-203-4536)

코로나19 확산 관련, 산업R&D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치사항 마련

① '20년 3.20일 前 접수마감 과제 접수기간 연장 및 평가일정 연기
② 피해기업 기술료 납부연장 및 R&D 매칭부담 완화 등 재정부담 경감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, 이하 '산업부')는 **코로나19가 확산됨에** 따라 **산업기술R&D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치방안**을 마련하였다.

○ 연구현장에서 우려되는 **감염 확산 소지를 사전에 차단**하고, **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,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**하기 위함이다.

1 먼저 상반기에 지원예정인 신규과제 중 **접수 마감이 3월 20일 이전**인 과제에 대해 **접수기간을 2주간 연장**하기로 하였다.

○ 금년 1월~2월 공고된 산업기술 R&D는 **중장기·중대형 규모로 이루어지는 특성**으로 인해 연구자들은 **산·학·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**하는데,

○ **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연구자들의 이동제한, 대면기피** 등으로 사업기획 관련 협의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.

2 또한, **위기경보 수준이 '심각' 단계인 동안**에는 **선정·단계·최종평가의 평가일정을 잠정 연기**한다

○ 대부분의 연구개발(R&D)사업은 **3~4월에 대면 발표평가가 예정**되어 있으나 **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평가를 잠정 연기**하였다.

3 한편 산업기술 R&D 참여 중소기업 중 **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**의 **재정부담을 경감**하기로 하고, 규정을 개정하여 이번 달 중 바로 시행 할 예정이다.

○ 코로나19 피해기업의 **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**하고,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 R&D 사업비 중 **민간부담금을 완화***하는 한편, R&D 현금지원이 제한된 **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도 일정부분 현금 사용이 가능**토록 할 예정이다.

*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비중을 현재 33%에서 20%로 감면

4 아울러, **코로나19로 인한** 행사, 출장 취소에 따른 **수수료** 및 행사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마스크, 손소독제 등 **감염 예방 용품** 구매에 사용된 비용도 **R&D 사업비**로 **지원**이 가능하도록 산업기술 R&D 전담기관*을 통해 연구수행자에게 이미 **안내 조치**하였다.

*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

□ 산업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**연구자들과 연구수행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**되도록 앞으로도 **R&D 수행시 애로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**하고, 필요시 **적시에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**해 나가기로 하였다.

붙임 : 1. 접수기간 연장 사업
2. 감염병 대처 및 예방관련 경비 인정기준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양동춘 사무관(☎ 044-203-423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1 산업기술 R&D 접수기간 연장 사업

공고 번호	기 공고 사업명	과제 접수 마감일시	
		당초	변경
제2020-33호	2020년도 초절전LED융합기술개발사업	3.02(월) 18:00	**3.16(월) 18:00**
제2020-32호	2020년도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	3.02(월) 18:00	**3.16(월) 18:00**
제2020-68호	2020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	3.03(화) 18:00	**3.17(화) 18:00**
제2020-68호	2020년도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	3.03(화) 18:00	**3.17(화) 18:00**
제2020-19호	2020년도 (재공고)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	3.10(화) 18:00	**3.24(화) 18:00**
제2020-88호	2020년도 시장자립형 3세대 xEV산업육성사업	3.10(화) 18:00	**3.24(화) 18:00**
제2020-0039호	2020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	3.13(금) 18:00	**3.27(금) 18:00**
제2020-103호	2020년도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	3.18(수) 18:00	**3.31(화) 18:00**
제2020-106호	2020년도 항공기구조물 국제공동개발사업	3.19(목) 18:00	**3.31(화) 18:00**
제2020-105호	2020년도 스마트캐빈 기술개발사업	3.19(목) 18:00	**3.31(화) 18:00**

붙 임 2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

□ 배경

○ 최근 **코로나19(COVID-19) 발생**에 따른 **학회 및 행사개최 취소,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** 관련 **사업비 집행에 대한 문의 급증**으로 산업기술 R&D 사업비 집행 기준 안내

<참고 : 감염병 관련 최근 주요 질문>

① **(대처)** 전염병 대처를 위해 학회참석이나 행사개최를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경비(취소 수수료 등)를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?

② **(예방)** 손세정제, 일회용 마스크 등 전염병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을 사업비로 구입할 수 있나요?

□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

○ **(대처) 감염병 대처**를 위해 사업계획을 **불가피하게 변경함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한 경비***는 **사업비로 집행 가능**

* 학회 취소에 따른 항공 및 숙박 예약 취소 수수료, 기 납부 학회등록비, 회의장 대관 및 행사 용역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

○ **(예방)** 연구 수행에 따른 **감염병 감염을 예방**하기 위한 **경비***는 사업비로 집행 가능

* 해당 과제와 관련된 회의 및 행사 참여자들의 감염병 감염 예방물품(손세정제, 일회용 마스크 등) 구입 경비

⇨ 단, 해당 과제 참여연구원의 연구실안전 등을 위한 손소독제, 마스크 구입비용 등은 간접비(연구실안전관리비)로 집행해야 함

□ 기타

○ 과제 수행과 무관하게 **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취소수수료(위약금 등 포함) 등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**